

의안번호	2201071
의 퇴 인	서삼석의원
회 답 일	2024. 8. 16.
추 계 번호	24D1361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개정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또는 내항여객운송사업자¹⁾에게 국가가 선박의 운항비용 또는 구입·건조·수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34억 7,800만원 등 추계기간 동안 총 181억 3,100만원(연평균 36억 2,6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평균
인구감소지역 내 선박의 운항비용 또는 구입·건조·수리비용 지원 (안 제24조제7항 신설)	3,478	3,592	3,712	3,832	3,517	18,131	3,626

주: 본 추계 결과는 지원대상, 지원규모 등에 대한 가정을 바탕으로 유사 사업을 준용하여 추계한 것으로, 향후 실제 지원사업의 내용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달라질 수 있음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 내용	비고
1	안 제23조(의료 기반의 확충)	-국가는 인구감소지역 관할 시·도별로 1개 이상의 지역거점 의과대학과 부속 종합병원을 설치하여야 함 -국가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시·군·구에 소재한 의료기관 중 응급실·내과·분만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수 의료분야에 대해서는 시·군·구별로 1개 이상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운영에 필요한 의료시설 및 장비, 인건비, 운영비 등을 지원하여야 함	의무규정
2	안 제24조제7항 신설(주거·교통기반의 확충)	-국가는 인구감소지역 내 섬 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선박을 운항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운법」에 따른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항비용 또는 선박 구입·건조·수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재량규정

1) 「해운법」 제3조(사업의 종류)에 따르면, 내항여객운송사업이란 국내항과 국내항 사이를 운항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을 말함

3	안 제28조의2 (출산 권장을 위한 지원)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내 주민에게 양육하고 있는 미성년 자녀 수에 따라 출산지원금을 정기적으로 지원할 수 있음 -국가는 인구감소지역 내 가구의 자녀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진학할 경우 출생 순서에 구분없이 해당 자녀의 학비를 지원할 수 있음 -국가는 인구감소지역 내 가구의 보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어린이집 용지와 보육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통학을 위한 조치, 보육교직원 확보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의무·재량 규정
---	----------------------------	---	-------------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23조(의료기반의 확충)	×	인구감소지역 관할 시·도별로 설치될 지역거점 의과대학과 부속 종합병원의 규모,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에 대한 인건비·운영비 지원 규모 등을 추정 곤란
2	안 제24조제7항 신설(주거·교통기반의 확충)	○	-
3	안 제28조의2(출산 권장을 위한 지원)	×	인구감소지역 내 주민에게 지원할 출산지원금 규모, 학비 지원 규모, 어린이집 지원 규모 등을 추정 곤란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안 제24조제7항에 따른 지원은 선박의 구입·건조비용과 수리비용 지원으로 나누어 추계함

-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 내 섬 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선박을 운항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게 운항비용 또는 선박 구입·건조·수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선박의 운항비용은 해양수산부가 기존 사업²⁾으로 지원하고 있으므로, 개정

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없는 것으로 가정하고, 선박의 구입·건조비용과 수리비용을 추계함

□ 현재 인구감소지역 내에 위치한 섬 292개 중 19개³⁾의 섬에 대하여 국가가 1척씩 신규 선박의 구입·건조비용을 지원한다고 가정함

○ 2022년 말 기준으로 인구감소지역 내 위치한 섬 중 인구가 5인 이상이며, 여객선·유도선 등이 기항하지 않고, 노둑길·연륙교·행정선 등 대체수단이 없는 섬은 24개임⁴⁾

○ 해양수산부가 2023년부터 여객선·도선 등이 미기항하는 소외도서에 지방자치단체가 항로를 운영하는 비용을 지원⁵⁾하고 있으므로, 24개의 섬 중 해당 사업의 2023년 사업대상지(5개⁶⁾)를 제외하여 추정함

□ 신규 선박을 구입·건조하는 비용은 1척당 8억원⁷⁾으로 가정하고, 이 중 50%(4억원)를 국가가 지원한다고 가정함

○ 추계기간 5년 동안 나누어 구입·건조비용을 지원하며, 2026년·2027년·2028년·2029년에 각각 4척씩 구입·건조하고, 2030년에 3척을 구입·건조한다고 가정함

○ 각 항로별 구입·건조 주체를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19개의 섬 중 9개의 섬은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10개의 섬은 지방자치단체가 선박을 구입·건조한다고 가정함⁸⁾

○ 국가가 지원하지 않는 나머지 50%의 선박 구입·건조비용(1척당 4억원)은 지방자치단체 구입·건조 선박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내항여객운송사

2) 해양수산부 세부사업 국가보조항로 결손보상금(6134-300)사업의 내역사업 국가보조항로 결손보상금(2024년 198억 7,300만원) 및 연안여객항로 안정화지원(2024년 25억원) 사업으로 항로운영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음

3) [참고1] 선박 구입·건조비용 지원대상 섬 현황

4)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5) 세부사업 국가보조항로 결손보상금(6134-300)사업의 내역사업인 소외도서 항로 운영지원사업(2024년 20개 항로 대상 9억원 편성)으로 행정선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유틸비, 선박 검사·수리비 등 항로 운영비용을 지원하고 있음

6) 전라남도 완도군의 다량도·초완도, 전라남도 진도군의 상구자도·하구자도, 경상남도 고성군의 자란도

7)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여객선·유도선·행정선 등 정기선이 운항하지 않는 섬은 주민 수가 많지 않아 5톤 선박을 구입·건조해도 여객 운송이 가능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1척당 8억원임

8) 연도별 주체별 구입·건조 가정은 다음과 같음

(단위: 척)	2025	2026	2027	2028	2029	합 계
지방자치단체 구입·건조	2	2	2	2	2	10
내항여객운송사업자 구입·건조	2	2	2	2	1	9
합 계	4	4	4	4	3	19

- 업자가 구입·건조하는 선박은 사업자가 자체 부담한다고 가정함
- 선박의 구입·건조비용은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따라 매년 상승한다고 가정
- 선박의 수리비용 지원금액은 해양수산부의 소외도서 항로 운영지원 사업의 선박 검사·수리비용을 준용하고, 인구감소지역 내의 섬 중 여객선·유도선·행정선 등 정기선이 운항 중인 98개의 섬⁹⁾에 매년 지원한다고 가정함
- 해양수산부의 2024년 예산안 산출근거에 따르면, 소외항로 운항 선박의 항로별 평균 검사·수리비는 연 2,100만원으로 이 중 50%(1,050만원)를 국가가 지원함
- 선박의 수리비용은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따라 매년 상승한다고 가정
- 개정안에 따라 구입·건조되는 신규 선박은 구입·건조된 해의 다음연도부터 수리비용을 지원한다고 가정함
- 구입·건조되는 신규 선박은 1척당 1개의 항로를 운행한다고 가정
- 국가가 지원하지 않는 나머지 50%의 수리비용(연 1,050만원)은 지방자치단체 구입·건조 선박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구입·건조하는 선박은 사업자가 자체 부담한다고 가정함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를 적용함¹⁰⁾
- 공포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개정안의 부칙과 법안 심사 및 예산 심의기간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선박의 구입·건조비용 지원

9) 2023년 말 기준으로 인구감소지역 내 위치한 섬을 운항하는 여객선 항로 수는 71개(해양수산부, 2023.12.31. 기준), 유·도선 항로 수는 27개(해양경찰청, 유도선 항로정보, 2023.10. 기준)이며, 인구감소지역 내 행정선을 운항하는 항로는 없음(해양수산부의 수리비용을 지원받는 항로는 제외함)

10)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

(2024년 7월 기준, 단위: %)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소비자물가상승률(CPI)	2.2	2.2	2.1	2.1	2.1	2.0

- 추계의 전제에 따라 19개 섬에 대하여 신규 선박을 구입·건조하는 비용을 지원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24억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120억 8,100만원으로 추계됨
- 국가는 선박의 구입·건조주체와 관계없이 신규 선박에 대하여 구입·건조비용의 50%를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전체 신규 선박 중 지방자치단체가 구입·건조하는 10척의 선박의 구입·건조비용의 50%를 부담함

[표 2] 선박 구입·건조비용 지원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척,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국가 부담	국가 지원 대상 선박 수(A)	4	4	4	4	3	19
	1척당 구입·건조 비용 지원 금액(B)	400	408	417	426	435	-
	소 계(C=A×B)	1,600	1,632	1,668	1,704	1,305	7,909
지방자치단체 부담	지방자치단체가 구입·건조하는 선박 수(a)	2	2	2	2	2	10
	1척당 구입·건조 비용 지원 금액(b)	400	408	417	426	435	-
	소 계(c=a×b)	800	816	834	852	870	4,172
선박 구입·건조비용 지원에 따른 추가재정소요(C+c)		2,400	2,448	2,502	2,556	2,175	12,081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선박 수리비용 지원

- 추계의 전제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내 선박을 운항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게 수리 비용을 지원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10억 7,8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60억 5,000만원으로 추계됨
- 기존 운항 98개 항로에 수리비용 1,050만원(전체 수리비용의 50% 지원)을 매년 지원하고, 개정안에 따라 구입·건조되는 신규 선박은 구입·건조한 다음 연도부터 매년 수리비용을 지원함
 - 국가가 지원하지 않는 나머지 50%의 선박 수리비용(연 1,050만원)은 지방자치단체 구입·건조 선박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구입·건조하는 선박은 사업자가 자체 부담

[표 3] 선박 수리비용 지원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국가 부담	기존 선박 수리비용 지원	항로 수(D)	98	98	98	98	98	－
		항로당 수리비용 지원금액(E)	11	11	11	11	11	－
		소 계(F=D×E)	1,078	1,078	1,078	1,078	1,078	5,390
	신규 선박 수리비용 지원	신규 항로 수(d)	0	4	8	12	16	－
		항로당 수리비용 지원금액(e)	11	11	11	11	11	－
		소 계(f=d×e)	0	44	88	132	176	440
	합 계(F+f)		1,078	1,122	1,166	1,210	1,254	5,830
지방 자치 단체 부담	지방자치단체 구입·건조 신규 선박 수리비용 지원	신규 항로 수 (누적)(G)	0	2	4	6	8	－
		항로당 수리비용 지원금액(H)	11	11	11	11	11	－
		소 계(I=G×H)	0	22	44	66	88	220
	선박 수리비용 지원에 따른 추가 재정 소요 (F+f+I)		1,078	1,144	1,210	1,276	1,342	6,050

주: 1.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였음

2.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인구감소지역 내 섬을 운항하는 98개 항로 중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항하는 항로는 없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다. 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섬 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선박을 운항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게 국가가 선박의 구입·건조·수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34억 7,800만원 등 추계기간 동안 총 181억 3,100만원으로 추계됨

[표 4]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국가	선박 구입·건조	1,600	1,632	1,668	1,704	1,305	7,909
	선박 수리	1,078	1,122	1,166	1,210	1,254	5,830
	소 계	2,678	2,754	2,834	2,914	2,559	13,739
지방자치 단체	선박 구입·건조	800	816	834	852	870	4,172
	선박 수리	0	22	44	66	88	220
	소 계	800	838	878	918	958	4,392
합 계		3,478	3,592	3,712	3,832	3,517	18,131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추계 결과는 지원대상, 지원규모 등에 대한 가정을 바탕으로 유사 사업을 준용하여 추계한 것으로, 향후 실제 지원사업의 내용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한예슬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한예슬	02-6788-4831	yeseulhan@nabo.go.kr

[참고1] 선박 구입·건조비용 지원대상 섬 현황

- 인구감소지역 내 위치한 섬 중 인구가 5인 이상이며, 여객선·유도선 등이 기항하지 않고, 노들길·연륙교·행정선 등 대체수단이 없는 섬은 2023년 말 기준으로 19개로 추정됨
 - 해양수산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으로 인구감소지역 내 위치한 섬 중 인구가 5인 이상이며, 여객선·유도선 등이 기항하지 않고, 노들길·연륙교·행정선 등 대체수단이 없는 섬은 24개이나, 이 중 해양수산부의 2023년 소외도서 항로운영 지원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항로 운영을 지원받은 5개 섬¹¹⁾을 제외하여 추정함

[표 5] 선박 구입·건조비용 지원대상 섬 현황

광역자치단체 (섬 수, 개)	기초자치단체 (섬 수, 개)	섬 이름 (인구수, 명)
충청남도 (2)	보령시(1)	불모도(5)
	서천군(1)	유부도(77)
전라북도(2)	고창군(1)	내죽도(53)
	부안군(1)	거륜도(11)
전라남도 (14)	고흥군(3)	수락도(15), 첩도(6), 진지내도(8)
	보성군(1)	지주도(21)
	영광군(1)	대각이도(31)
	완도군(9)	섭도(6), 우도(13), 원도(13), 장도(11), 노록도(44), 대제원도(5), 어룡도(30), 허우도(12), 예작도(42)
경상남도(1)	고성군 (1)	와도(9)
전국 (19)		

자료: 해양수산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11) 전라남도 완도군의 다량도·초완도, 전라남도 진도군의 상구자도·하구자도, 경상남도 고성군의 자란도